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우1630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 전화(031)243-5221,2 / 팩스(031)251-9770 / www.kgta.or.kr

문서번호 경기화협 제123호

시행일자 2019. 2. 22.

수 신 각회원

(경유)

참 조

선 결		지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504호(2019.2.19.)와 관련입니다.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19.2.15.(금)부터 시행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래와 같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운행제한 제도 안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상 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시행 시기	‘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시부터 (19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예상)
단속 시기	- 서울 → ‘19.2.15.부터 - 인천·경기 → ‘19.6.1.부터	〃
단속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제외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혹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저공해 조치차량)	
유예 대상	총중량 2.5톤미만 차량, 수도권 이외 등록차량 (‘19.6.1.부터 시행)	
과태료	10만원	10만원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T.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4.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을 하여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의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2-6969-5042)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

<뒷면계속>

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예된 과태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및 운행제한 시기

오늘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이며, 내일 미세먼지가 기준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에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며, 다음날 06~21시까지 운행제한 실시(주말 미시행)

- 붙임 : 1.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1부.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3. 참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1부. 끝.
붙임 자료는 본 협회 홈페이지 “협회공문시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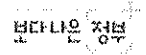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 사 장 고 달





환경부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사업 안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3.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후 차주가 고의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에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 귀 협회 소속의 회원들에게 위 사항을 안내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붙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 1부. 끝.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공해조치 절차대행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직영차량 : 대표자 / 위수탁차량 : 차주)이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02-6969-5042)*(전화1544-0907)로 신청
 - * 동 fax는 신청서를 웹에 저장하고 접수결과는 문자로 자동 회신하는 기능이 있으나 신청서 접수 초기에는 접수 건수가 폭주하는 상황으로 회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9년 3월 31일까지
 - ※ 신청서 접수기간을 두는 이유는 실제 저공해조치를 희망하는 차량을 파악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 소요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필요한 차량
 - ※ 수도권 지자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관할 운송업체 등에 기 송부함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2019년 2월 15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2.5톤미만과 수도권외 지역의 5등급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속)
 - (인천시·경기도) 인천시 일부지역(옹진군은 제외, 영흥면 포함)과 경기도 전역에서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비수도권) 해당 지자체 조례 제정 후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사도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입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소유자 정 보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 용 본 거 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5등급 차량정보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 조기폐차 中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절차대행자)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기재요령

(직영차량 : 법인 대표자 정보 기재 / 위수탁차량 : 차주 정보 기재)

Q 배출가스 등급 안내 홈페이지 접속 차량번호를 입력

○ 임시홈페이지(일반) : emissiongrade.meca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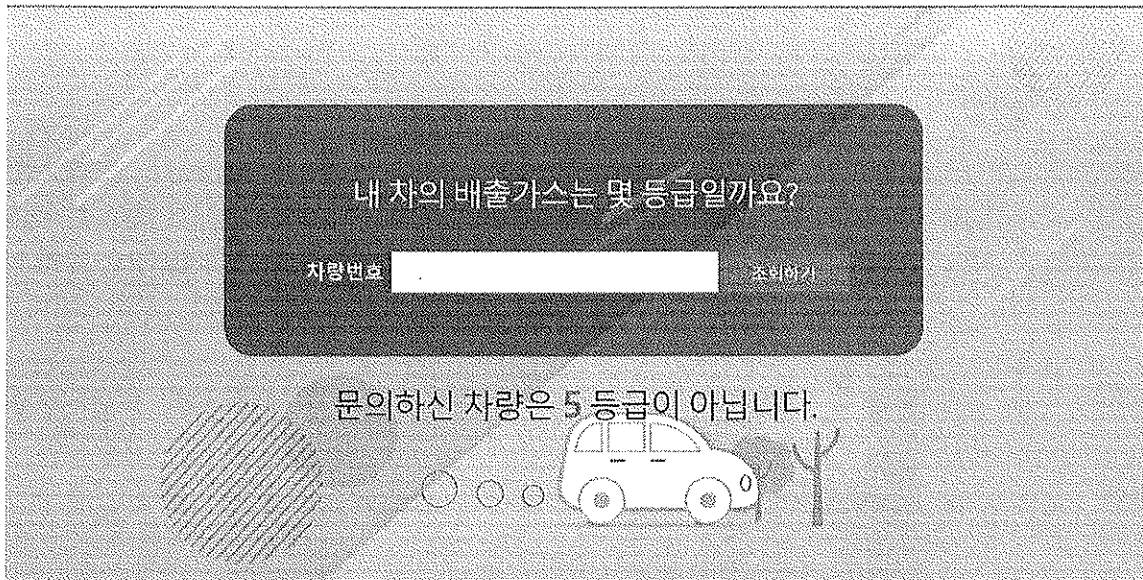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등급조회

배출가스등급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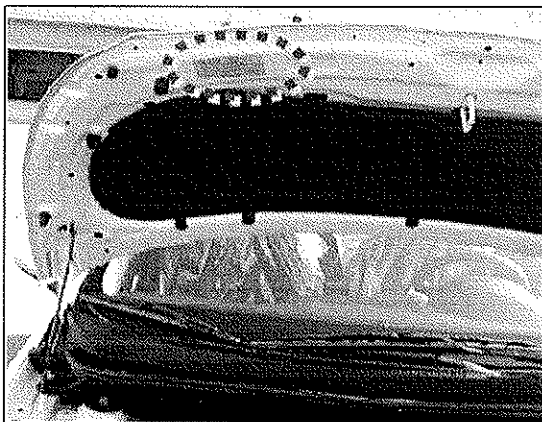
자주찾는질문(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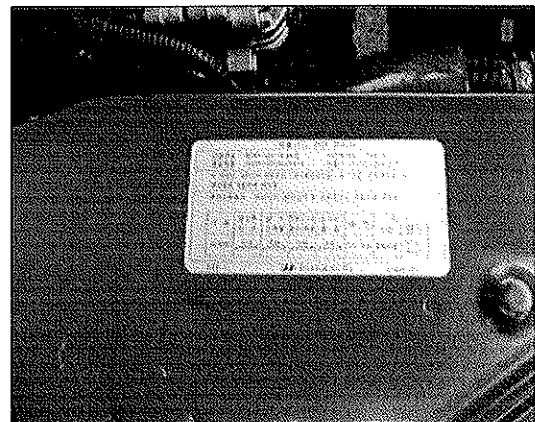
Q 내차 등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 본넷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위치



본넷



엔진후드

자동차별 배출가스 표지판 형태

전기자동차 (1등급)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제조사: 현대자동차(주)		차종: 전기자동차	연비등급: 1등급
구분	배출가스 비율기준	주요제원	보충기준
배출가스	0g/km	종류: AC 최대출력: 17ps/4000rpm 충전전압: 22.8V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충전시간: 3년 또는 50만km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1회 충전 주행거리			
구분	도시	고속도로	합계
배출가스	0g/km	0g/km	0g/km

하이브리드자동차 (1등급)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인출번호: HMY-HD-12-26		연비등급: 1999cc	배출가스지정단위: 인출
제조사: 현대자동차(주)		차종: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등급: 1등급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기동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됨			
연비조절장치: 점화시기 및 공회전수는 자동으로 조절됨			
점화시기(도시): 자동으로 조절됨			
구분	배출가스 비율기준	주요제원	보충기준
배출가스	0.01g/km	종류: AC 최대출력: 17ps/4000rpm 충전전압: 22.8V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충전시간: 3년 또는 50만km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1회 충전 주행거리			
구분	도시	고속도로	합계
배출가스	0.01g/km	0.01g/km	0.01g/km

휘발유(가스)자동차 (1등급)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제조사/모델명: Volkswagen AG / Passat 1.8 TSI		연비등급: GMY-AD-13-2	배출가스지정단위: 인출
제조사: GMY-AD-13-2		차종: 휘발유자동차	연비등급: 1등급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기동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됨			
연비조절장치: 점화시기 및 공회전수는 자동으로 조절됨			
점화시기(도시): 자동으로 조절됨			
구분	배출가스 비율기준	주요제원	보충기준
배출가스	0.01g/km	종류: AC 최대출력: 17ps/4000rpm 충전전압: 22.8V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충전시간: 3년 또는 50만km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1회 충전 주행거리			
구분	도시	고속도로	합계
배출가스	0.01g/km	0.01g/km	0.01g/km

질소산화물+탄화수소=0.0125+0.00625=0.01875 g/km

경유자동차 (5등급)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인출번호: HMY-HD-15호		연비등급: 2497cc	배출가스지정단위: 인출
제조사: 현대자동차(주)		차종: 경유자동차	연비등급: 5등급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기동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제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됨			
연비조절장치: 점화시기 및 공회전수는 자동으로 조절됨			
점화시기(도시): 자동으로 조절됨			
구분	배출가스 비율기준	주요제원	보충기준
배출가스	0.01g/km	종류: AC 최대출력: 17ps/4000rpm 충전전압: 22.8V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충전시간: 3년 또는 50만km 충전지: 3년 또는 50만km
1회 충전 주행거리			
구분	도시	고속도로	합계
배출가스	0.01g/km	0.01g/km	0.01g/km

Q 내차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본넷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저감장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본인 연락처를 적어서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신청하신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안내 예정입니다.

Q 5등급 차량인데 저공해화(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이행

-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으로 안내가 되나,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등 특이사항이 같이 표기됩니다. 만일 표시되지 않는 경우 차량번호, 저감장치 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keco.or.kr)으로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운행제한 시기에 대한 문의

< 기본 답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이상이고,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오늘 17시경에(오후 5시) 발령됩니다.

운행제한은 내일 06시 ~ 21시까지 실시됩니다.

< 발령기준 >

- ① 당일 (00~16시) PM-2.5 $50\mu\text{g}/\text{m}^3$ 초과 + 익일 예보 PM-2.5 $50\mu\text{g}/\text{m}^3$ 초과
- ② 당일 16시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 + 익일 예보 PM-2.5 $50\mu\text{g}/\text{m}^3$ 초과
- ③ 익일 예보 PM-2.5 $75\mu\text{g}/\text{m}^3$ 초과

Q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되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후 5시경 재난문자 예보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영방송, 뉴스, 라디오, 신문 등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재난문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송되기 때문에 연락처를 따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대기질 안내를 위해 재난문자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대상인지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장치 미개발)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가능하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이 걸린 상황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통계적으로 1년에 10회 이내로 발령되므로, 해당일에는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생계형 등으로 부득이 하게 운행이 필요한 차량은
---	----------------------------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80만대에 달하고,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예산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산부족으로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 과태료를 유예토록 하고 있습니다.